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63 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이헌승·김선교·김도읍

강선영 · 서일준 · 서지영

김승수 • 박덕흠 • 고동진

유영하 · 정성국 · 윤상현

신성범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, 그 결과도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.

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,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.

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도록 하며,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 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려는 것임.

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

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(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제24조의2(신의성실의무 등) ① 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 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,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9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임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 <u>〈신 설〉</u> 제91조(징계 사유) ① (생 략)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< <u>〈신 설〉</u>	제24조의2(신의성실의무 등) ① 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 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 지하고,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91조(징계 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②
	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 우